

대전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가합1024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4. 주식회사 덕스(DUX,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지알우드)

변론 종결2015. 2. 27.

판결 선고2015. 3. 11.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328,529원 및 그 중 2,258,378,707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2014. 5.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3. 체결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08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084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084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덕스와 피고 A 사이에 2013. 11. 1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덕스는 피고 A에게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29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다음 표 기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009. 9. 3.	2010. 9. 3.	2013. 9. 3.
보증금액	8억 원	10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0. 9. 3.(그 후 2014. 8. 29.로 변경되었다)	2011. 9. 2.(그 후 2014. 8. 29.로 변경되었다)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전은행동지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국민은행

2009. 9. 3.	2010. 9. 3.	2013. 9. 3.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 부채채무까지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 발행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억 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2억 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1) 피고 A이 국민은행에 대한 이자 연체 등으로 2013. 11. 11.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 27. 국민은행에 총 2,268,449,467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807,213,808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096,020,986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65,214,6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2014. 1. 27.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동시에 10,070,760원을 회수하였고, 그 결과 그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3,310원(= $10,070,760 \times 1\text{일}/365 \times 0.12$,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946,512원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피고 A은 2013. 11. 1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0847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084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084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또한, 피고 A은 2013. 11. 14. 피고 주식회사 덕스(이하, 피고 '덕스'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4,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덕스에게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2945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B'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관련 부가가치세를 2013. 10. 31.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의 합계

2,259,328,529원[대위변제금 합계 2,258,378,707원{= 797,143,048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807,213,808원 - 회수금 10,070,760원) + 1,096,020,986원 +

365,214,673원}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상 확정손해금 3,310원 + 비용 946,51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 2,258,378,70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덕스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었고, ②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이전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원고가 2014. 1. 27. 국민은행에 2,268,449,467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덕스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 덕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덕스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덕스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기

판사안지연

판사박지숙

별지